CHON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VIEW

CNU LAW REVIEW

제20호

원고 모집 공고

원우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CNU Law Review에서는
CNU Law Review 제20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 본인의 원고를 등재하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2025년 7월 21일(월) 자정까지
아래의 원고 투고 요령과
CNU Law Review 원고 작성 방법을 참조하셔서
cnulslr@gmail.com

앞으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Review
편집장 안 명 진 (직인생략)

CNU Law Review 원고 투고 요령

2025. 5. 21.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원고를 제출한다.
 나. 투고논문은 2025년 7월 21일(월) 자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법학관련 논문, 소논문, 케이스 노트, 최신판례 및 법령분석, 학회 및 세미나 리뷰, 북 리뷰, 프로젝트의 형식을 갖춘 법학관련 자유주제로 한다.

3.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가. 논문 - A4지 15p 이상
 나. 소논문 - A4지 10p 내외
 다. 최신판례 및 최신법령 분석 - A4지 5p 이상
 라. 케이스 노트 - A4지 10p 내외
 마. 중요 학회 및 세미나 리뷰 - A4지 5p 이상
 바. 북 리뷰 - A4지 5p 이상
 사. 프로젝트 - A4지 10p 이상

4. 원고 작성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글자모양(한글에서 Alt+L을 누름)
  1) 제목의 경우
  -서체 : 휴먼둥근헤드라인, 장평 : 100, 자간 : 0, 크기 : 14
  2) 본문의 경우
  -서체 : 한컴바탕, 장평 : 100, 자간 : 0, 크기 : 10
  3) 각주의 경우
  -서체 : 바탕, 장평 : 95, 자간 : -5, 크기 : 9
 나. 목차의 순서
 -큰제목부터 순서대로 Ⅰ. 1. 가. 1) 가) (1) ① 로 작성.

5. 원고 마감일 이후 접수된 논문은 당회 간행에서 제외하며 투고자의 의사에 따라 다음 회 간행을 위해 접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6. 원고 제출처 : 원고의 게재신청에 대한 문의는 CNU Law Review 편집위원회로 하고, 투고자는 논문을 아래 전자우편 주소로 송부한다.

- 전자우편 주소 : cnulslr@gmail.com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Review

편집장 안 명 진 (직인생략)

[별첨] CNU Law Review 원고 작성 방법

1. 편집용지(A4)의 여백주기(한글에서 F7키를 누름)

- 위쪽 : 20, 아래쪽 : 15, 왼쪽 : 30, 오른쪽 : 30, 머리말 : 15, 꼬리말 : 15

2. 글자모양(한글에서 Alt + L을 누름)

1) 제목의 경우

- 서체 : 휴먼둥근헤드라인, 장평 : 100, 자간 : 0, 크기 : 14

2) 본문의 경우

- 서체 : 한컴바탕, 장평 : 100, 자간 : 0, 크기 : 10

3) 각주의 경우

- 서체 : 바탕, 장평 : 95, 자간 : -5, 크기 : 9

3. 문단모양(한글에서 Alt + T를 누름)

1) 본문의 경우

- 왼쪽 : 0, 오른쪽 : 0, 들여쓰기 : 0, 줄간격 : 160, 문단위 : 0, 문단 아래 : 0, 정렬방식 : 혼합

2) 각주의 경우

- 왼쪽 : 0, 오른쪽 : 0, 내어쓰기 : 0, 줄간격 : 130, 문단위 : 0, 문단 아래 : 0, 정렬방식 : 혼합

4. 목차의 순서

- 큰제목부터 순서대로 Ⅰ. 1. 가. 1). 가). (1). ①. 로 작성.

5. 필자 표기 요령

- 필자의 표기 : 논문의 제목 아래에 저자를 표기하고, 오른쪽에 *표를 하여 각주란에 인적사항을 표기.
- 필자가 복수인 경우 필자의 이름 사이에 '*'를 표시해 구분하는 방식으로 모두 밝히고, 제1저자, 제2저자 등을 표기.
- 기관 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

6. 각주 표기 요령

1) 기본원칙

(1) 외국문헌까지도 되도록 한글을 사용. 예컨대 면, ○○○ 엮음, ○○○ 옮김, 앞의 책, 위의 책 등.

(2) 외국문헌의 경우에도 저자명, 서명, 논문제목, 잡지명, 출판사 등의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표기. 설령 외국인이 보더라도 저자와 저서명 그리고 출판사의 고유명사만 있으면 그 출전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되도록 국내문헌의 표기방식에 따라 외국문헌을 표기.

(3) 외국 잡지의 경우 처음 인용 시 잡지명을 전부 기재하고 그 이후각주에서는 약어로 표시.

예) Harvard Law Review → Harv. L. R.

2) 처음 인용할 경우 : 동양문헌은 국내문헌과 같이 표기.

(1) 저서인용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물권법」, 전남대학교출판사, 2007, 99면.

- 서구문헌의 경우 저자의 표기는 성(Last name)을 앞에, 이름(First name)을 뒤에 표시하며,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예) Maus, Ingeborg, Rechtstheorie und politische Theorie im Industriekapitalismus, Wilhelm Fink Verlag, 1986, 99면.

-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본래의 이름으로 표기.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옮긴이의 이름을 쓰고 "옮김"을 덧붙임. 서명은 국내서에 따름.

예) Cain, Maureen/ Hunt, Alan, 홍길동 옮김, 「인권과 법률」,터, 2002, 99면.

- 엮은 책의 경우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엮은이의 이름을 쓰고 "엮음"을 덧붙임. 저자와 엮은이가 같을 경우에는 엮은이를 생략할 수 있음.

예) Heller, Hermann, "Politische Demokratie und soziale Homogenitat(1928)", Matz, Ulrich 엮음, Grundprobleme der Demokratie,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99면.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제 권 호, 출판연도, 면수. 필요한 경우 출판연도 앞에 잡지발행기관을 밝힐 수 있음.

예) 홍길동,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 「법학논총」통권 제6호, 1993, 99면.

- 월간지의 경우 제 권 ○호와 출판연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년 ○월호로 대신할 수 있음.

예) 홍길동, "국가보안법의 비판적 검토", 「월간법학」1992년 3월호, 99면.

-서구문헌의 경우 논문 제목은 따옴표로 묶고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예) Maus, Ingeborg, "Sinn und Bedeutung von Volks-souveranitat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Kritische Justiz, 1992, 99면.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임.
예) 藤田勇, 홍길동 옮김, "헌법해석의 기본시각", 「민주법학」 통권 제6호, 1993, 99면.
(3)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 ○○ 선생 …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인권의식의 전개와 확대", 『인권의 현실: 홍길동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문지사, 1999, 99면.
-서구문헌의 경우 논문제목은 겹따옴표로 묶고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예) Frotscher, Werner, "Selbstverwatung und Demokratie", Selbstverwaltung imStaat der Industriegesellschaft: Festschrift zum 70. Geburtstag von GeorgChristoph von Unruh, R. v. Decker's Verlag, 1983, 99면.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임.
(3-1) 발표문과 토론문 : 저자명, "논문제목", 「심포지엄 명칭: 심포지엄 주제」, 주관단체명,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보안경찰에 대한 검토", 「2005 경찰개혁 연속 토론회 : 경찰 보안부서에 대한 개혁방안」, 인권실천시민연대, 2005년 11월, 18면.
(4) 판례인용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판결 : 대법원 ○○○ . ○○. ○ . 선고, ○○ ○○ 판결.
결정 : 대법원 ○○○ . ○○. ○ . 자, ○ ◇○○ 결정.
결정 : 헌법재판소 ○○○ . ○○. ○ . 선고, ○○헌 ○○ 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례인용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음.
『헌법재판소판례집』, 제 권 집, 결정연도, 쪽 2) 아래 면.
-단, 외국의 판례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되 앞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꿈.
예) Roe v. Wade, 410 U.S. 99, 113(1973).
-독일판례의 경우 판례집의 권수와 면수 등.
예) BVerfGE 제79권, 1988, (127면 아래) 129면.
(4-1) 법령명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며 「」안에 표시하며, 제 호 제 항 제 호 목의 형식으로 표기.
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5)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면수를 따로 밝히지 않음.
「신문명」, ○○○ . ○○. ○ 자.
예) 「한겨레신문」, 1999. 9. 9자.
-필요한 경우에 글쓴이와 글 제목을 밝힐 수 있음.
예) 홍길동, "선거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한겨레신문」, 2000. 11. 30자.
(6)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작성일자 혹은 검색일을 표기.
예)홍길동,「인요한(존리튼)」,<http://delsa.or.kr/bbs/zboard.php?id=pea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8>, 검색일: 2006.12.30.
-출판된 문헌을 인터넷 DB에서 확인하여 인용한 경우에는 국내문헌 표기법을 따르고 ":" 이후 URL 및 검색일을 표기.
예) 홍길동, "위장도급의 준별과 그 법적효과", 「용봉법학」 통권 제30호, 2006, 79면 :<http://delsa.or.kr/bbs/skin/ggambo7002_mailboard/down.php?id=dls&no=506&file_no=1>, 검색일: 2006.12.30.
3) 앞의 각주 혹은 같은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 :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구문헌 모두 같음. 단, 저자나 문헌 혹은 양자모두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고 각각 필요한 저자명, 문헌명 등을 덧붙여 표기함.
예) ① 홍일동, 앞의 책, 100면.
② 홍이동, 위의 글, 100면.
③ 홍삼동, 「인권법 연구의 방법」, 100면.
(1)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닌 앞의 각주의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① 저서인용 : 저자명, 앞의 책, 면수.
예) 홍길동, 앞의 책, 100면.
② 논문인용 : 저자명, 앞의 글, 면수.
예) 홍이동, 앞의 글, 100면.
③ 논문 이외의 글 인용 : 저자명, 앞의 글, 면수.
예) 홍삼동, 앞의 글, 4면.
(2)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면수", "위의 글, 면수"로 표시.
(3)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책, 면수", "같은 글, 면수"로 표시.
4) 기타 사항

(1)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되 저자간의 표시는 /로 구분하되 /이후에는 한 칸을 띄어 씀.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1인의저자명 외 남은 저자수를 표기.
(2) 외국인의 이름은 처음에는 이름과 성을 온전히 표기하되, 중간 이름은 첫글자만을 표기. 그 이후에는 이름의 경우 약자로 표기. 일본인의 경우 이름은 모두 붙여 씀.
(3) 부제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원래 문헌의 표기양식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콜론(:)으로 연결.
(4) 글의 성격상 전거만을 밝히는 각주가 너무 많을 경우 약자를 사용하여 본문에서 그 전거를 밝힐 수 있음.
(5)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으로 연결하고,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재인용출처 사이는 콜론(:)으로 연결.
예) 홍길동, 「용봉법학」, 전남대학교출판사, 1992, 99쪽 홍이동, "민주주의와 인권", 「법학논총」통권 제6호, 1993, 99면을 참조.
예) Welcker, Carl, Staatslexikon, 99면: Schreiber, H. L., Der Begriff der Rechtspflicht , 1980, 100면에서 재인용.

7. 원고 작성에 참고하거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하였던 참고문헌의 상세 정보는 본문 말에 별도로 표기한다.

-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국내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문문헌, 기타 서양문헌의 순서로 하고, 국문문헌의 경우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재함.
- 각 문헌의 상세 정보의 구체적인 표기요령은 각주의 표기요령과 동일함.
- 각 문헌 항목은 다시 단행본, 논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함.